

의안번호	2218777
의 퇴 인	윤영석의원
회 답 일	2026.08.04.
추계번호	26C248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9조의4 신설 (학생 정신건강 증진교육 등)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 및 사회·정서 역량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제2항). 1. 정서조절 및 스트레스 관리 2.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의 이해 및 예방 3. 생명존중 및 자살 예방 교육 4. 또래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 5. 그 밖에 학생의 사회·정서 역량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재량규정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제3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의 내용·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제4항).	의무규정
2	안 제15조 제4항 내지 제7항 신설 (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교육감은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조기발견·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을 지정하여 학교에 지원할 수 있으며,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전문인력이 학교를 순회하며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제4항).	재량규정
		제4항에 따른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제5항).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 「의료법」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간호사 3.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임상심리사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중 정신건강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학생 정신건강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의무규정
		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지원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제6항).	재량규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전문인력의 배치 기준, 업무 범위 및 운영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7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9조의4 신설 (학생 정신건강 증진 교육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5조 제4항 내지 제7항 신설 (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교육부장관 등이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 및 사회·정서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교육지원청에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해 개별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현행 「학교보건법」 제9조¹⁾는 학교장이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도박 중독 예방,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
 - 이에 따라 개별 학교는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지침을 바탕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교육 시수는 시·도교육청별로 차이가 있으나 통상 보건교육 17차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학기별 1회 이상 등임
 -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2025년에 사회정서교육²⁾을 시범 도입해 매년 6차시 실시를 의무화하였으며, 향후 이를 17차시로 확대할 계획임³⁾
- * [참고자료]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편성 기준 예시(경기도교육청)

1)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회정서교육”이란 학생들의 긍정적인 성장과 정신건강 증진을 목표로 사회정서역량을 강화하는 학교 기반의 보편적 마음건강 교육을 의미함

교육부, 「2026학년도 모든 학교에서의 사회정서교육 확대를 위한 맞춤형 현장 지원 강화」 (2026.1.27.)

3) 교육부,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 (2025.12.), 18p

관계부처 합동,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 (2026.6.), 6p

- 한편,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제2호⁴⁾ 등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위기학생 지원 사업인 ‘위(Wee)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부 훈령⁵⁾에 따라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인력과 전문상담(순회)교사를 개별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 배치·운용하고 있음
 - ‘위(Wee) 프로젝트’는 개별 학교, 교육(지원)청, 전문기관의 연계를 바탕으로 위기학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4월 기준 9,666개 기관이 운영 중이며, 전문상담인력은 8,921명이 배치되어 있음

[표 1] 연도별 위(Wee) 프로젝트 기관 구축 현황

(단위: 개)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위(Wee) 클래스	8,059	8,619	8,863	9,115	9,407
위(Wee) 센터	206	206	206	207	207
위(Wee) 스쿨	15	16	17	17	16
가정형 위(Wee) 센터	19	19	19	19	19
병원형 위(Wee) 센터	13	13	14	16	17
합계	8,312	8,873	9,119	9,374	9,666

자료: 교육부 제출

[표 2] 연도별 전문상담인력 배치 현황

(단위: 개)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전문상담교사	3,850	4,574	4,776	5,043	5,169
전문상담순회교사	820	824	826	826	868
전문상담사	3,444	3,275	3,125	3,008	2,884
합계	8,114	8,673	8,727	8,877	8,921

자료: 교육부 제출

4)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다만,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지 아니하고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두어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2. 진단·상담·치유·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5)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부훈령 제329호)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이하 "전문상담사 등"이라 한다)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기관의 장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근무계약을 맺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위 클래스) ④ 위(Wee) 클래스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상담사' 등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또는 교육지원청의 장 등은 '전문상담사' 등을 일괄 채용하여 위(Wee) 클래스에 배치할 수 있다.

제5조(위 센터) ④ 위(Wee) 센터의 장은 제3항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상담사' 등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위 스쿨) ③ 위(Wee) 스쿨의 장은 제2항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상담사 등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 개정안 시행으로 학생 대상 정신건강 증진 교육 등이 실시되고, 교육지원청에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이 배치되는 경우 교육 운영비 및 전문인력 인건비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현재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교육 시수 확대 및 전문인력 확보 등 교육부의 관련 사업 확대 계획이 존재하며⁶⁾, 교육의 내용·방법 및 전문인력의 배치기준 등 제도의 구체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현수	문지은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현수	02-6788-4627	jhs@assembly.go.kr

6) 교육부는 사회정서교육을 현행 6차시에서 17차시로 확대하고, 전문상담교사 증원, 정원의 채용 등을 통해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확보할 계획임
교육부,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 (2025.12.), 18p

[참고자료]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편성 기준 예시(경기도교육청)

- (운영근거)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III.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 ※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범교과 학습 주제(10개)' 동일
- (운영방법) 범교과 학습 주제 간 통합 운영, 관련 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연계·운영 등 교육 활동 전반(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걸쳐 탄력적으로 운영
- (관련자료) 범교과 학습 주제 적용 관련 자료 「에듀넷」에 탑재
 - ※ (경로) [2015 개정] 교육정책→교육과정→교수·학습→범교과학습주제→인성교육 116번 게시물
 - [2022 개정] 교육정책→교육과정→교육과정 운영지원→2022 개정 교육과정→19~21번 게시물

범교과 학습주제	세부 주제	기준 시수 (법령·고시·지침)	편성·운영 방법
①안전·건강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51	•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 등과 연계한 안전교육 운영 내실화 및 학 교급별 안전교육 자료 적극 활용 ※ 학교안전지원시스템(schoolsafe24.or.kr) 참고 • 최근 학생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자전거, 전동형킥보드 등 개인형이 동장치(PM)에 대한 교육 필수 편성 ◦ (교육과정 내) 학교급별 교육과정 수업시간의 1/3 이상을 교육한 경우 1차시로 인정 ※ 초등학교 10분, 중고등학교 15분 이상 ◦ (교육과정 외) 수업 전·후, 방과후, 행사 등에서 1회 5분 이상, 총 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1차시로 인정 ※ 단, 교육시간(단위: 차시)은 반드시 공문 및 계획 등 입력 근거에 의 해서 실시된 것만 인정 가능

범교과 학습주제	세부 주제	기준 시수 (법령·고시·지침)	편성·운영 방법
①안전·건강	소방 안전교육	연 1회	안전교육 통합 운영 및 교과교육 연계(소방훈련 별도)
	양성평등교육	15	-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자율시간 등 학교급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실시 - 법정의무교육(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을 위한 시수 필수 편성 - 디지털 성폭력(딥페이크, AI 등) 예방을 위한 교육 별도 편성
	보건교육	17	- 학교급별 1개 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관련 교과(보건, 생물, 체육 등)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연간 17차시 이상 운영 - 범교과 학습 주제 중 관련있는 주제 간 통합 운영 가능 - 교육부지침(연도별 학생건강증진분야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학교는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보건교육을 계획·실시
	영양·식생활 교육	연 2회 이상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운영 - 안전·건강 교육과 통합 운영 가능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사회정서교육)	6	교과·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 운영하거나 안전교육, 인성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관련 주제에서 사회정서교육을 운영할 경우 시수 인정
	학교폭력 예방교육	11	- 학급당 11차시 이상(사이버폭력 예방 3차시 이상 포함) 편성 ‘어울림(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교육 실시 - 안전교육, 인성교육, 사회정서교육, 도박예방교육 등 관련 주제와 통합 운영 가능

범교과 학습주제	세부 주제	기준 시수 (법령·고시·지침)	편성·운영 방법
②인성	인성교육	의무	• 도덕, 실과, 기술·가정, 정보 등 관련 교과를 통해 세부 주제 통합 운영 권장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연 1회 이상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 운영하거나 인성교육, 민주시민, 인권 등 관련 주제와 통합 운영 시 시수 인정
	디지털 역량교육 (디지털 안전과 윤리, 디지털 시민성, 디지털 리터러시)	의무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운영 ※ 관련 자료를 함께학교(www.togetherschool.go.kr) AI 디지털교육자료-디지털 역량 교육자료에 탑재 예정
③진로	진로교육	의무	• 교과(중고는 ‘진로와 직업’ 포함), 창의적 체험활동(진로활동), 중학교 자유학기(진로탐색활동), 학교자율시간 등 학교급별 교육과정과 체계적으로 연계된 진로교육 실시
④민주시민	민주시민교육	권장	• 통합교과(바·슬·즐), 국어, 사회, 도덕, 통합사회 등 관련 교과를 통해 세부 주제 통합·운영 ※ (선거교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교육자료 활용, (헌법교육) 법무부·헌법재판연구원 등 유관기관 교육자료 활용
⑤인권	장애인식 개선교육	2	• 인권교육, 교과교육과 연계하거나 장애인의 날 장애이해수업과 연계할 경우 시수 인정
	인권교육	권장	•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자율시간 등 학교 교육과정과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실시
⑥다문화	다문화 이해 교육	2	•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자율시간 등 학교급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
⑦통일	통일교육	의무	• 통일교육주간(5월 4주)과 연계 운영 • 도덕, 사회 등 관련 교과와 통합·운영 • 통일부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등 적극 활용 ※ 5시간 이상 운영 권장

범교과 학습주제	세부 주제	기준 시수 (법령·고시·지침)	편성·운영 방법
⑧독도	독도교육	권장 (10시간 이상)	- 교과, 창의적체험활동 등 학교급별 교육과정과 통합 - 독도교육주간과 연계하여 운영
⑨경제·금융	경제·금융교육	권장	사회, 실과, 기술·가정, 경제, 통합사회, 실용경제 등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자유시간과 연계·통합 운영
⑩환경·지속가능발전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의무	- 환경, 사회, 과학, 실과 등 관련 교과와 통합·운영 -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자유시간과 연계 운영

자료: 경기도교육청 자료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